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학 관련 협조

## 1. 관련근거

- 가.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나.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다.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2. 사회복무요원은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협조사항

- 1) 사회복무요원이 복학신청 시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에 남은 연가 기간을 감안하여 복학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2) 복학 비대상자가 복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끝.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수신자 관내 대학의 장

주무관	안지현	복무관리과 계장	양명준	복무관리과 과전결	2023.9.1.
				장	박동철

협조자

시행 복무관리과-4692 (2023. 9. 1.) 접수

우 34944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6번길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문화동) / <http://www.mma.go.kr>

전화번호 042-250-4471 팩스번호 042-250-4479 / [jhan715@korea.kr](mailto:jhan715@korea.kr) / 비공개(2)